

원자력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 경위와 내용 해설-

이 상 대

과학기술처 원자력검사과 토목주사



이

원자력 시설의 안전 규제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령, 원자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원자력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하여 기술 기준 등이 복잡·다양하여 법령에서는 상세 기술 기준 및 이행 사항 등을 과학기술처 장관이 정하여 운영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정 배경

그동안 정부에서는 원자력 관계 사업자들이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 「원자력 관계 보고 규정」을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여기에는 사업자가 허가 신청시 준수하기로 약속한 운영기술지침서의 각종 보고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원자력 관계 사업자나 해당 업무를 감독하여야 할 공무원 모두 보고 규정만 보고서는 '보고 사항' 여부를 판단하는 데 혼란을

겪어 왔다.

이는 규정의 명칭은 「원자력 관계 보고 규정」이면서도 규정에 포함된 내용은 원자력 법령 및 인허가시 명시한 각종 보고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아 적용에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는 점과 일부 사항들이 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 이를 과감히 발굴하여 정리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기존의 「원자력 관계 보고 규정」은 92년 12월 1일 제정하여 운영하던중 95년 5월에 발생한 고리 원전 제한 구역내의 방사성 물질 오염 사건을 계기로 95년 8월 개정하여 운용하여 왔지만, 개혁과 규제 완화 및 규제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보고 사항 등을 정부 차원에서 과감히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

과학기술처는 지난 7월 기존의 「원자력 관계 보고 규정」을 철삭·보완하여 「원자력 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제정했다.

이는 그동안 원자력법령에 의하여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보고해야 할 사항이 원자력법, 원자력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 방사선 비상계획서,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 등에 산재되어 있어, 사업자나 규제기관 모두 혼란이 있어온 점을 해결한 것으로, 보고 대상과 보고 방법 등을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일부 사항들을 발굴·정리하였다.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규제의 투명성 확보는 정부에서 운용한 「불합리한 규정·기준 일제 정비 사업」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원자력 관계 보고 규정의 문제점

보고와 관련된 사항은 원자력 법령, 원자력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 방사선비상계획서 그리고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 등에 산재(散在)되어 있어,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모든 보고 사항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하고, 보고하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로 운용되어 왔다.

또한 원자력 사업의 추진은 국제적으로 감시와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정한 각종 협정 및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간의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과의 각종 협정·협약 및 이행 각서 등을 국내법으로 전환함에 있어 명확한 법적 뒷받침이 없는 관계로, 이행하는 데 규정화하지 못하고 일부 지침 상태로 운영하여 왔다.

아울러 그동안 보고된 사고·고장 관련 보고서가 규제 기관 차원에서 데이터 베이스(data base)화 되지 못하고 단지 일과성 보고에 그쳐, 향후 안전 규제의 참고 자료 및 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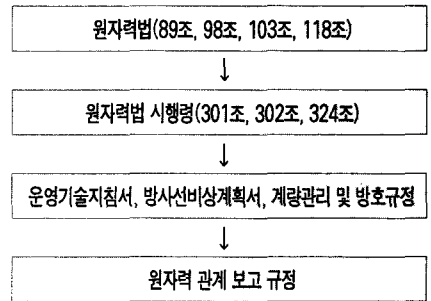
의 설비 개선 및 안전 운영을 위한 피드백(feedback)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고장 등급을 분류하는 체제 역시 과학기술처의 지침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규정화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정 목적

원자력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보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며 규정된 분야 또한 다양하다.

- 원자력 시설에서 사고·고장이 발생한 때(원자력법, 운영기술지침서)
 - 방사성 물질의 도난·분실·화재 등이 발생한 때(원자력법, 운영기술지침서)
 - 방사선 비상을 발령하였을 때(원자력법, 방사선비상계획서)
 - 핵물질의 이동 및 재고량이 변화할 때(원자력법,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
 -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원자력법, 운영기술지침서)
- 이와 같이 다양한 보고 사항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사업자나 규제기관에서도 그 적용에 다소 혼란이 야기되었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그림) 원자력 관련 보고 체계도

위하여 보고 사항을 일괄적으로 통합, 사업자나 규제자가 보고 유무의 판단 및 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통합된 부분은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고장 등으로 인하여 국민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었으며, 핵물질의 이동 및 재고량 변화 보고와 정기적인 보고 사항은 통합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핵물질 관련 사항 및 정기적인 보고 사항은 규제 기관의 긴급 개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보고 규정에 반영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보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하고, 운영기술지침서에서 규정한 사고·고장시의 보고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였다.

또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도 중 사고·고장 등급의 평가 및 사고·고

장 내용의 대언론 발표 등 과학기술처 지침으로 운영되던 사항들을 규정으로 승격하는 등 명실 상부한 보고 규정으로 재정립하였다.

추진 경위

1. 초안 작성

「원자력 관계 보고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96년 2월부터 3월까지 과학기술처에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실무진에서 1차 검토를

수행한 후, 3월 2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참여한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결과 작성된 초안 내용 중 일부 미흡한 점이 도출되어,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의 수행, 개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의견 반영, 도출된 문제점 보완 및 수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전담팀은 과학기술처 1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인, 한국전력공사 1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과학기술처에

서는 보고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였다(표 2).

이러한 방침에 의하여 전담팀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각종 보고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보고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였다.

2. 전담팀의 작업

전담팀 요원 4명은 96년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모여 최종안 작성을 위한 실무작업을 수행하였다.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합동으로 어떠한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서로 이해하는 각도와 처한 입장이 달라, 가능한 한 규제자는 많은 사항을 포함시키려 하고 이에 구속받는 사람은 가능한 한 줄이도록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전담팀 요원 모두는 소속된 기관의 입장을 떠나, 공인(公人)의 입장에서 무엇이 과연 보고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가능한 한 서로의 의견이 합의된 사항만을 가지고 규정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논의 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과학기술처에서 방안을 제시하고 다시 협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특히 전담팀에서는 과학기술처 방침에 따라 보고 규정을 새로 작성하였으며, 그동안 실무 일선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 1) 원자력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 관계 사업자가 보고해야 할 사항

- 원자력 시설에서 사고·고장이 발생한 때
- 방사성 물질의 도난·분실·화재 등이 발생한 때
- 방사선 비상을 발령한 때
- 핵물질의 이동 및 재고량이 변화한 때
-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고리 원자력본부에서 개발한 방사성 폐기물 드럼 운반용 특수 차량

(표 2) 보고 규정에 반영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

- 현행 보고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
- 사업별로 보고 대상을 구분
- 사고·고장과 관련된 사항은 단일 보고 규정 체제 구축
(운영기술자침서의 보고 사항을 보고 규정에 반영)
- 즉시 보고 시한 연장 및 즉시 보고 대상 축소
 - 단 사회적인 관심 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원자로의 불시 정지 등은 기존의 체제 유지
 -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사고·고장 보고서 제출 의무화
- 계량 관리 및 방호 규정에 의한 사항은 보고 규정에 미포함
- 일상적인 보고 사항(정기 보고 사항)은 보고 규정에 미포함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히 하여, 규제자나 피규제자가 보고 제도를 운용·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3. 관계 기관의 재검토와 규정 탄생

전담팀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서는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의 상당 부분을 수용하여 최종적인 「원자력 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에 관한 규정(안)」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96년 7월 2일 「원자력 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에 관한 규정」이 확정되었으며, 7월 5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시행일인 96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

1. 사업자별 보고 대상의 세분화 원자력법에 따라 분류하는 원자력

핵물질 사용자,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자 및 폐기업자로 분류하고 있지만, 본 규정에서는 생산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그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보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을 세분화하여 명시하였다.

사업자별 보고 내용 중 대부분은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와 연구용 원자로 설치자에 해당된다.

이러한 이유는 타사업자보다는 사고·고장 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고장 내용이 확대되어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원자력 안전 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만약 사고·고장의 발생시 정부에서 신속하게 개입하여, 사안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관계 사업자는 발전용 원자로 건설·운영자·생산업자, 연구용 원자로 등 설치자, 핵연료 주기사업자 및

사업자별로 보고 대상을 세분화한 이유는 어떠한 보고 대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고 대상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보고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보고 방법의 세분화

가. 방사선 비상 발령 보고 (긴급 보고)

방사선 비상을 발령한 경우에는 그 사태의 긴급성과 심각성이 중대하므로 30분 이내에 가능한 보고 수단을 총 동원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상황이 더욱 악화될 때에도 30분 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하였다(표 3).

보고 방법으로는 발령 시간, 방사능 방출량, 지역별 예상 피폭선량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비상에 대응하는 모든 소의 대응 기관이 보고 내용에 따라 즉시 개입, 사고 수습 및 국민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사고·고장 보고(즉시 보고)

기존의 보고 규정에서는 사고·고장 발생시 1시간 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그동안 본 규정을 운영하면서 느낀 사업자의 애로 사항을 반영하여 4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

그동안 보고 규정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즉시 보고하는 대부분의 사항은 원자로 불시 정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고도 중요하지만 정지 원

〈표 3〉 30분내로 신속하게 보고해야 할 사항

- 백색비상을 발령한 때
- 청색비상을 발령한 때
- 적색비상을 발령한 때
- 상황이 더욱 악화될 때

〈표 4〉 4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 방사선 장애가 발생한 때
- 의도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을 방출한 때
- 방사성 물질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
-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이 발생한 때
- 운영기술지침서의 운전 제한 조건의 조치 사항 위배시
- 원자로 정지 등이 발생한 때

인의 파악 및 원자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에서 보고 시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또한 원자로 불시 정지와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규제 기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단순한 정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 기관의 긴급 개입이 필요하지 않는 것도 보고 시간을 연장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이다.

즉시 보고의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는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과학기술처 주재관에게, 주재관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원자력검사과 또는 방사선 안전과)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사고·고장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사고·고장 등급 평가 결과도 제출하도록 하였다.

사고·고장 등급 평가 및 언론 발표 등은 그동안 과학기술처 장관의 지침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이번에 규정에 통합 반영하였다.

다. 사고·고장 보고서의 제출

정부에서 보고를 받는 주 목적은 원자력 관계 사업자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상 사태를 즉시 파악하여 필요할 경우 개입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사고·고장 내용을 피드백시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사고·고장의 발생시는 30일 이내에 사고·고장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동 보고서에 기술할 내용 또한 세분화 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활용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다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고·고장 내용의 피드백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규제 기관의 각종 검사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사업자의 모든 활동을 검사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발생한 사고·고장 내용의 피드백 실적 및 주요 사고·고장 사례 위주로 검사를 실시한다면, 사업자는 수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규제 기관은 부족한 규제 요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사고·고장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으로는 제목, 개요, 세부 내용, 안전성 평가 결과, 근본 원인 및 시정 조치 사항 및 사고·고장으로부터

얻은 교훈 등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일 사고·고장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내에 동일한 원인에 의한 사고·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단일 보고서로 제출토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고장은 이력으로 관리
- 사고·고장 등급의 평가는 발전용 원자로에 한함

라. 불필요한 보고 사항의 감축

그동안 운영하여 왔던 보고 규정은 우리 나라 대부분의 원자료가 미국에서 도입된 관계로, 미국의 보고 관련 법령인 10CFR50.72 & 10CFR50.73을 거의 여과없이 도입하여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의 법령은 미국 체제내에서는 적합하고 타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체제내에서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 기관과 피규제 기관 사이에서 규정된 내용의 해석 차이로 인하여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피규제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은 규제 기관 요원의 해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규제 업무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

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모든 보고 대상을 정밀 분석하여, 현실적인 적용 가능 유무의 검토 및 서로 이해하는 폭에 차이가 있는 사항들을 정리, 정성적·정량적으로 표기하여 피규제자의 권익 보호 및 실질적인 규제가 되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열거하면,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공학적 안전 설비의 작동에 대해서는 설비의 작동으로 인하여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던 없던간에 모두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다.

또한 “발전소의 상태나 주요 안전 방벽 기능을 심각하게 저하시켰거나” 또는 “발전소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분석되지 않은 상태 등”은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심각하게’·‘중대하게’ 등의 해석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사례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

피규제자가 보고하는 사항의 대부분은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의 원자력발전소는 미국·캐나다·프랑스에서 도입한 관계로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이 각



원자력발전소의 중앙제어실

기 다른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발전소는 보고를 하여야 하고 어떤 발전소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발전소의 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보고하는 목적과 보고를 받는 목적을 비교할 때,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같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자로별로 적용하는 운영기술지침서의 보고 사항을 전부 도출하여 모든 원자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각종 보고 사항 중 사고·고장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규제자나 피규제자가 느낄 수 있는 편리함은 다음과 같으리라고 생각한다

① 규제자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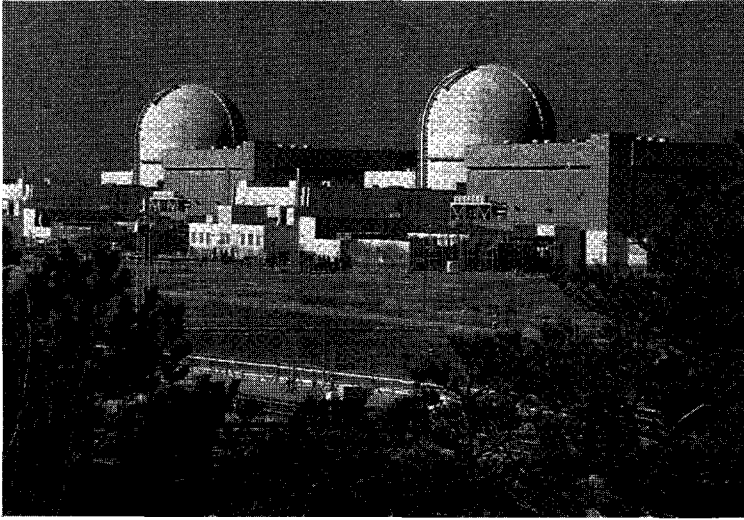
운영기술지침서는 원자로 운영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시점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 따라 보고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계로 동일한 사고·고장에 대하여 어떤 원자로는 보고를 하지만 어떤 원자로는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규제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없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을 이번의 규정 제정으로 규제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건설·운영할 노형에 구조적으로 특별한 특징이 없는 한 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 허가시 심사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피규제자측

사업자가 보고 관련 사항이 기술된



영광 원전 1·2호기. 그동안 과학기술처 장관의 지침으로 운영되었던 원전의 사고·고장의 등급 평가 및 언론 발표 등이 이번 규정에 통합·반영되었다.

운영기술지침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 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운영 변경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발전소에서 제안, 발전소 안전운영위원회 심의, 본사 안전운영위원회 심의, 규제 기관에 제출, 규제 기관의 심사 및 보완, 운영 변경 허가 취득, 본사에서 현장에 통보, 해당 부분 인쇄, 자체 및 관계 기관 배포 등)를 거쳐야 하나,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된 세부 보고 내용을 보고 규정에 반영하고 운영기술지침서에서는 삭제토록 함에 따라,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자력발전소 안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운영 변경허가와 관련된 피규제자의 업무를 간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변경에 따른 시간과 인력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고 요건이 원자로별로 동일하

로 인적 실수에 의하여 보고를 누락하는 사례를 감축시킬 수 있는 점은, 보고 미이행으로 인한 행정청의 조치를 감축 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맺는말

이번에 제정한 「원자력 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에 관한 규정」은 이를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서 태어났다.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보고 규정을 운영하면서 느낀 실무자(피규제 기관과 규제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각 기관의 이익보다는 원자력 안전성 확보라는 국가 사무를 완성이 위하여 피규제와 규제의 입장을 떠나서 진솔된 마음으로 의견을 교환

하면서 이번 규정을 제정하였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으며, 이러한 선례들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란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완벽하다고 하여도 이의 운영상의 완벽성은 인간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본 규정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관계 요원들에 대한 집체 교육을 96년 7월 30일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실시하였다.

규정에 포함된 내용과 의미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이의 시행시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행사의 주안점이었다.

향후 보고 규정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은 앞에서 기술한 제정의 취지를 되살려 운용하여 원자력 안전성 확보라는 대명제에 모두 솔선 수범하여 동참하여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이번에 제정된 내용 중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나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제 보고와 관련된 기본 토양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향후 보완시는 좀더 나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여도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준수하는 사람 모두 법과 규정을 준수하려는 의식이 충만하여야만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